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19가단44706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심정훈, 조세형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김하영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변론 종결 2021. 3. 10.

판결 선고 2021. 4. 1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518,605원 및 그 중 50,270,695원에 대하여 2019.7. 21.부터 2019. 12. 7.까지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E 주식회사의 수탁대리점으로서 2014. 6. 30.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조참가인이 피고회사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 제품을 공급하여 주고, 피고 회사는 휴대폰 단말기 판매 및 가입, 개통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위탁판매 및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세부약정으로 피고 회사가 동백, 청계, 양재, 하남, 가락 직영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각 직영점 전산운영 및 소매판매 약정을 체결하였다(위 세부약정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6. 3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보조참가인으로,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보험기간을 2014. 6. 30.부터 2015. 6. 29.까지로, 보증내용을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보증으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9%이다.

다. 피고 D은 2014. 6. 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0. 21. 사임한 자로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이행보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되었다.

라. 보조참가인은 2015. 8. 28.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위탁계약 상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보상심사를 거쳐 2019. 6. 20. 보조참가인에게 동백점

SI(시스템구축) 등 지원비용 관련 손해 23,357,860원, 가락점 SI 등지원비용 관련 손해 26,912,835원을 인정하여 합계 50,270,695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위 지급 보험금 50,270,695원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2019. 7. 2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247,9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50,518,605원(50,270,695원 + 247,910원) 및 그 중 50,270,695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2019.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인 2019. 12. 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 주장의 요지

- 1) 이 사건 연대보증은 보조참가인의 영업실장인 F가 피고 D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신청한 것으로, 피고 D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보증보험증권만을 발급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원고와의 통화확인 절차에서 동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D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
-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사고, 즉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실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피고 D의 연대보증 여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자신만이 접근 가능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5. 2. 3. 신설된 위 규정은 민법 제13125호 부칙제1조, 제3조에 의해 2016. 2. 4.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연대보증계약일이 2014. 6. 30.인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F의 강박에 의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증사고(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여부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11호증, 갑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보증사고, 즉 피고 회사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금50,270,695원(23,357,860원 + 26,912,835원)은 그 손해로서 상당하므로, 피고 D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불·편법 영업 및 비정상적 영업을 하거나 기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참가인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본 계약서 제8조), 피고 회사의 영업에 의하여 발생된 고객 불만에 의해 보조참가인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보조참가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세부 약정서 제5항),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최소 약정기간 12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 회사는 보조참가인에게 각 직영점에 지원된 SI비용과 간판지원비용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세부 약정서 제7항).

② 피고 회사의 불·편법 영업, 파행적 매장운영, 매장 임대료 미납, 공과금 미입금 등 채무불이행이 지속되자, 보조참가인은 2015. 6. 9.경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2015. 6. 16.자로 해지하고, 피고 회사는 그 손해로서 동백점 SI지원 변상금 74,027,500원, 가락점 SI지원 변상금 48,599,650원, 고객불만 변상금 17,871,635원, 단말기 분실 변상금 3,719,100원 총합 144,217,885원을 2015. 6. 16.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③ 원고의 보상심사를 통하여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기하여 보조참가인이 피고 회사에게 지원한 SI비용과 간판지원비용액은 동백점이 23,357,860원이고, 가락점이 26,912,835원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보증사고의 발생 및 그 손해액에 관하여 원고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F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D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증거는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그 손해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점에서도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